의 안 번 호

1558

## 【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】

#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5. 30.(목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5. 30.(목)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6. 11.(화)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제43조 및「지방자치법」제129조에 따라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지출결정액: 686,869천원(일반회계)

1) 지 출 액: 686,868천원

2) 집행잔액: 1천원

나. 지 출 내 역 : 4건 (단위 : 천원)

부 서	세 부 사 업	지출액	적 요
함	- 계	686,868	
경제산업과	농업재해 복구비 지원	3,068	이상저온 및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 피해농가에 보상금 지급
환경미화과	환경미화원 관리	643,699	민사소송 [부산고법 2014나54113], [부산고법 2014나54120]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
환경미화과	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		민사소송 [울산지법 2017가단62541 손해배 상(산)]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
안전총괄과	재해 응급복구	23,000	민사소송 [울산지법 2018가단55670] 화해권 고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

**4. 근거법규** :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

**5. 검토의견** : 없음

## 근 거 법 규

#### □ 지방재정법

-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 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129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소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  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